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2 발의연월일: 2020. 8. 6.

발 의 자: 맹성규·기동민·김영배

김홍걸 · 문정복 · 배진교

서동용 • 안규백 • 안호영

양정숙 • 유정주 • 윤재갑

이동주 • 이은주 • 장철민

정춘숙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천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세제 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배기량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

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항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2천500시시"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2천500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 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	
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	
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	
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u>2021년 12월</u>	<u>2024년 12월</u>
31일까지 면제한다.	<u>31일</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u>2천시시</u> 이하인	가2 <u>천500시시</u>
승용자동차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 략)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 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 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 각 <u>2021년 12월 31</u>일까지 면제 하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u>2천시시</u>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다. (생 략)
- 2. ~ 4. (생략)
- ⑤ (생략)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2024년 12월 31일	
1	
가 <u>2천500시시</u>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